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가단122513(본소), 2020가단136969(반소)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1. A

2. B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현, 송종영

피고1. C

2. D

3. E

4. F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담당변호사 최길림

변론 종결2020. 7. 10.

판결 선고2020. 9.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들,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G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3733호로 공탁한 305,232,406원 중 116,598,77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17,703,4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 원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2.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7,695,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 및 피고 C, D, E은 각각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56,485주, 8,580주, 7,150주, 35,035주, 35,750주 합계 143,000주(= 56,485주 + 8,580주 + 7,150주 + 35,035주 + 35,750주,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였고, 피고 F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였다.

나.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원고들 및 피고들은 2013. 4. 2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H과 I 발행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기준금액 10,000,000,000원'에서 '조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G는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013. 4. 25. 500,000,000원, 2013. 9. 17. 300,000,000원, 2014. 1. 29. 2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정산 합의

G는 2014. 7. 10.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잔금 중 1,0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조정금액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4. 7. 22. 조정금액을 ① H 및 I 금융부채 2,554,000,000원, ② 특수관계인 부채 1,858,200,000원, ③ 2014. 7. 9. 기준 미지급금 600,075,877원의 합계액에서 2014. 7. 9. 기준 외상매출금 355,031,810원을 차감한 4,657,2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하되, 3개월 뒤인 2014. 10. 21.까지 위 미지급금과 외상매출금을 2014. 7. 22.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이행 및 관련 소송의 제기

1) G는 기준금액 10,000,000,000원에서 계약금 1,000,000,000원, 기지급 잔금 1,000,000,000원 및 위 조정금액 4,657,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양수도대금 3,342,800,000원을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들은 G에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였다.

2) 이후 G는 원고들 및 피고들을 상대로 증가된 조정금액 청구 및 응축수 배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진술 및 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자금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들은 G를 상대로 조정금액의 감소로 인하여 G가 미지급한 주식양수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9770(본소), 2015가합575414(반소)).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6. 8. 'G가 미지급한 주식양수도대금은 양도인들이 지정하는 1인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양도인들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됨을 이유로, G는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203,572,829원 및 그 중 196,772,375원에 대하여는 2015. 12. 5.부터, 6,800,472원에 대하여는 2017. 10.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쌍방이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35729(본소), 2018나2035736(반소)), 서울고등법원은 2019. 4. 4.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G의 주식양수도대금 공탁

G는 2019. 4. 26.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9770(본소), 2015가합575414(반소)사건의 판결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3773호로 주식양수도대금 및 그 이자의 합계인 305,232,406원을 피공탁자를 원고들 및 피고들로 하여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된 금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바.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식양수도대금 배분 합의

한편,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7. 16.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의 배분을 위한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에 따라 산출된 지분율과 그에 따른 공탁금 금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56,485주	2,040,949,600원	38.2%	116,598,779원
원고 B	8,580주	309,882,400원	5.8%	17,703,480원
피고 C	7,150주	256,454,400원	4.8%	14,651,155원
피고 D	35,035주	1,266,243,600원	23.7%	72,340,080원
피고 E	35,750주	1,287,614,800원	24.1%	73,561,010원
피고 F	10,000주	181,655,200원	3.4%	10,377,902원
합계		5,342,800,000원	100%	305,232,406원

[인정근거]

- 원고들과 피고 C, D, E 사이 : 자백간주
- 원고들과 피고 F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G와의 이 사건 계약 및 피고들과의 주식양수도대금 배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에 해당하는 지분율에 따른 공탁금 금액 출금청구권, 즉 원고 A에게

116,598,779원, 원고 B에게 17,703,480원이 있다. 그런데 공탁금 수령권자 및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반소 청구는 본소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참조), 피고 F가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8. 24.에야 반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피고 F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조미옥

1) 지분율 = (개별 주식양도대금 / 주식양도대금 합계액) X 100

2) 지분율에 따른 공탁금 금액 = 지분율 X 공탁금